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전수곤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시행 2022. 1. 13.)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「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의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 등 목적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안 제2조)
나. 당직근무자 편성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다. 비상근무에 대한 발령 및 해제, 비상근무 요령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공무원법」,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규칙안은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당직, 비상근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당직근무자의 편성, 비상근무 발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의회 공무원의 효율적인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을 위해 본 규칙을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